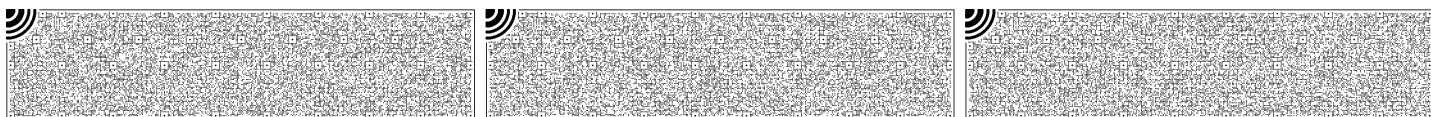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152호

의 안 명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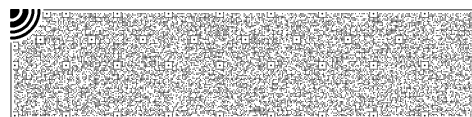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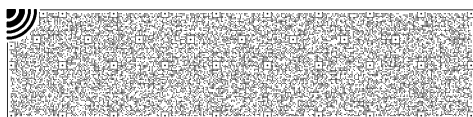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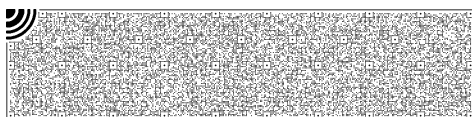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5. 18.

## 주 문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별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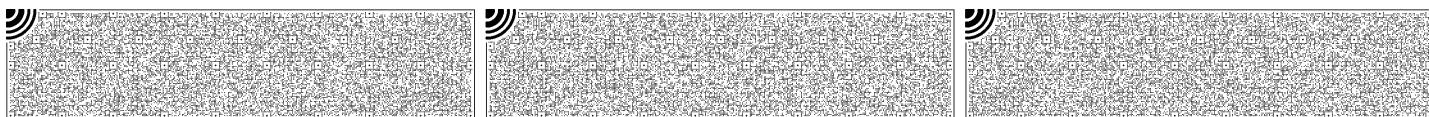
#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

20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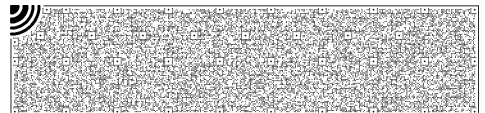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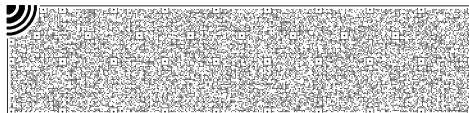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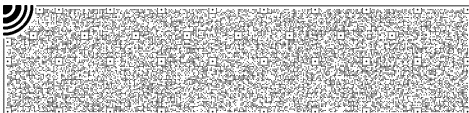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 추진배경 .....	1
II . 현황 .....	2
III . 문제점 .....	4
1. 어학성적 등록 및 검증 절차 반복 .....	4
2.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 제한 .....	8
IV . 개선방안 .....	11
1. 어학성적 확인 및 인정 기준 완화 .....	11
2. 어학성적 정보 공동이용 확대 .....	11
V . 조치사항 .....	12
[붙임] 관련 법령 .....	13



#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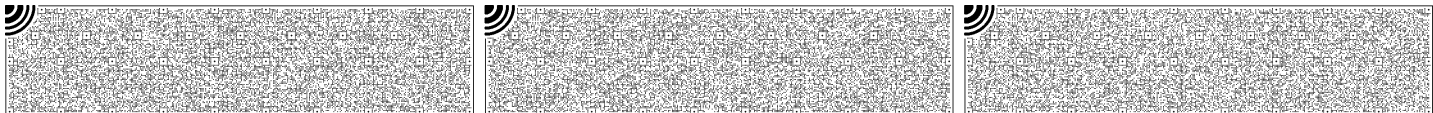
- 공인어학시험성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국가전문자격 시험 등에서 외국어과목을 대체하고 최대 5년간 인정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부담 완화
  - ※ 어학시험 시행사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기관에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하여야 함
- 그러나, 어학시험 시행사의 성적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성적 확인이 불가하여 추가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효과 미흡
- 또한,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등록된 어학성적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아, 수험생은 동일한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상황

###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운영 주요기관>

기 관	운영시스템(사이트)	비 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	
경찰청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public.jinhakapply.com)	
한국산업인력공단 <sup>1)</sup>	국가전문자격시험(q-net.or.kr)	국가전문 자격시험 <sup>2)</sup>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cpa.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certi.kidi.or.kr)	

- 이에 따라, 수험생이 한 번 등록한 어학성적을 인정기간(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1)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위탁 시행  
 2)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시행



II 현황

-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어학성적으로 대체하고 최대 5년까지 인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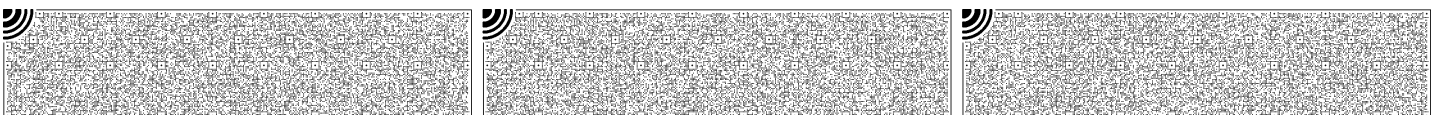
※ 공무원 임용시험 '21.1월부터, 공공기관 채용시험 '23.4월부터 시행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의 외국어과목 대체 어학시험>

구분	시험 과목	대체 어학시험
공무원 <sup>3)</sup>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FLEX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SNULT, FLEX
	독어	Test DAF, Goethe Zertifikat
	불어	델프/달프(DELF/DALF)
	러시아어	토르플(TORFL)
	중국어	한어수평고시(신HSK)
	일어	JPT, JLPT
	스페인어	델레(DELE)
공공기관 <sup>4)</sup>	영어	TOEIC, TEPS, TOEFL, G-TELP,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G-TELP Speaking, IELTS, OPIc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SNULT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오픽(OPIc)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중국어	한어수평고시(신HSK)

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및 별표3의2

4)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23.4.18.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국가전문자격시험) '23.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외국어 과목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됨

**<제도개선 권고 및 조치결과 (요약)>**

-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시험 과목으로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시,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
    - ※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조치결과: '25.12월 기준 관련 법령 '어학성적 인정기한' 조항 개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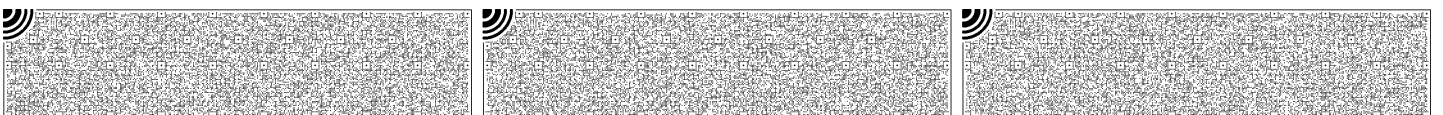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험생은 개별기관에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 활용하고 있음

**<주요 기관 어학성적 사전등록 현황>**

운영기관	어학성적 사전등록 건수(건)					비 고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행정안전부*	16,200	13,102	8,296	7,126	2,072	공무원 채용
인사혁신처	12,620	20,866	123,301	109,171	173,709	
경찰청		45,458	15,221	12,847	11,166	
한국산업인력공단			6,224	8,608	6,891	국가전문 자격시험
금융감독원		9,252	14,510	11,212	4,793	
보험개발원			15	1,002	1,929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기준일 현재 유효 건수)

\* '25.7월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 III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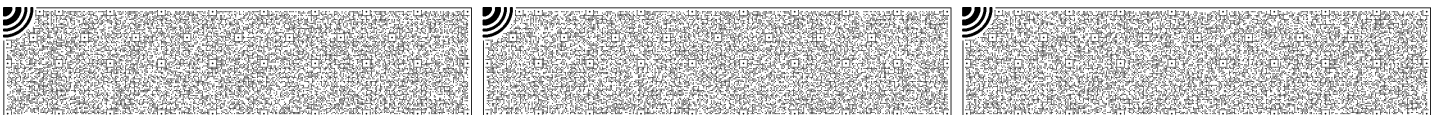
#### 1 어학성적 등록 및 검증 절차 반복

-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행정안전부)」 등에서 응시원서 접수 및 어학성적 등록 등 절차 진행
  -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별도의 어학성적 등록이나 성적표 업로드 없이 시스템 연계, 공문 등을 통해 활용하고 있음
    - ※ '23년~'25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총 156,960건 공유
- (국가전문자격시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시행기관\*에서 시험 공고, 응시원서 접수 및 어학성적 등록 등 시행
  - \*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 보험개발원(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 개별 법령에는 영어 등 외국어과목은 어학성적으로 대체하고, 각 시험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해당기관 원서접수사이트에 등록된 어학성적만 인정하며, 타 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련 법령 및 시행계획 공고문>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 2026년 세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 ❖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재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기 제출내역은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승인된 성적 확인가능)
-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 2026년 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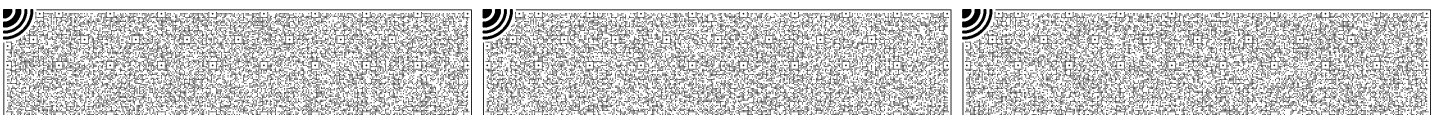
② 영어성적인정 신청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영어성적 인정신청'란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취득 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 2026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 영어성적 등록 방법

- 인터넷 등록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kidi.or.kr) → 영어성적 등록 메뉴

(영어성적 사전 등록 안내)

◆ (인정조건)

- ① (유효기간) 영어시험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 시행일(2025.02.18.) 이후인 성적으로서,
- ② (성적확인) 진위확인을 위하여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확인된 성적

◆ (인정제외)

- ②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가 아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2026년 공인노무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영어시험성적표 사전등록제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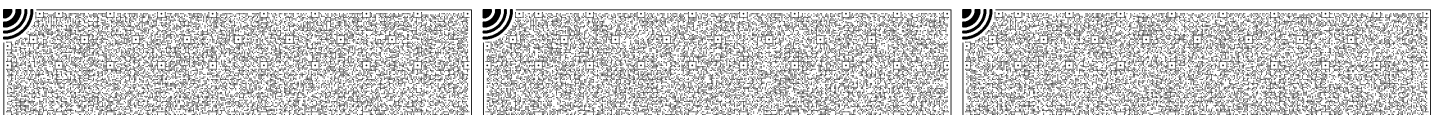
나. 영어시험성적 사전 제출 등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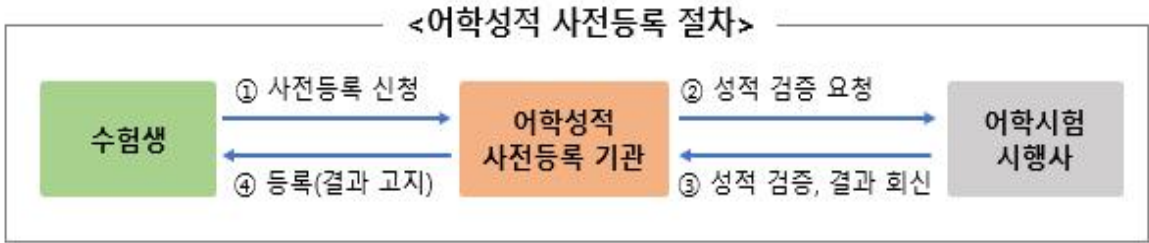
- 반드시 '코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 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수험생)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 완료되므로, 어학시험 시행사 유효기간(2년) 내에 시험 응시 기관에 어학성적을 등록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경과 시 채용시험 등에 원서접수를 포기하거나 추가로 어학시험에 응시하는 등 불편은 여전

※ 어학시험 시행사의 유효기간은 2년(성적조회 가능)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하는 5년보다 짧음





- 또한, 특정기관에 어학성적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를 타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개별기관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실정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통합채용포털 등록 → 큐넷 활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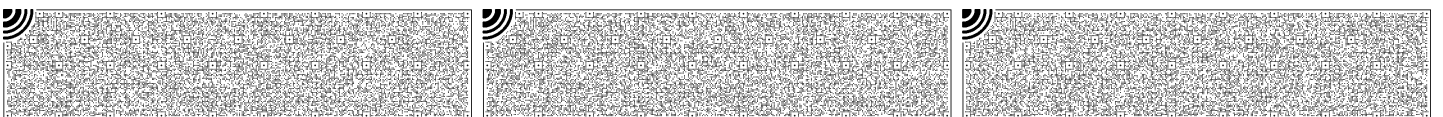
- 세무사시험 접수하려는데, 21년 6월 토익성적은 3년이 지나서 토익 홈페이지에서 성적표 발부가 안 되어 '큐넷'에 외국어 성적 등록이 안 됨.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토익성적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어학성적 확인서가 있으니 외국어 성적으로 등록해주면 좋겠음('24.8월)
- 내년 노무사 시험에 도전하려는데, 2022년 3월에 본 토익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학성적 추가 등록이 불가한 상황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 성적이 등록되어 있으니,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인정해주면 좋겠음('24.10월)

**<큐넷 등록 → 통합채용포털 활용 불가>**

- 「큐넷」에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하였는데, 「통합채용포털」은 따로 인가 봄. 「큐넷」에 등록된 어학성적을 「통합채용포털」로 이관해주세요('24.10월)
- 2022년 12월 G-TELP 시험에서 공인노무사시험 영어면제 기준을 충족하였고, 2024년 11월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어학성적을 사전등록 완료하였음(유효기간 2027.12.31.).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큐넷」에 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원서접수가 거부되어, 공인노무사시험 1년의 응시기회를 박탈당하였음('25.3월)

※ 인사혁신처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21.1월) → 통합채용포털('24.6월)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25.6월)에서 제공

- 이에 따라 수험생은 동일한 성적자료를 여러 기관에 등록하고, 개별기관은 각각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력 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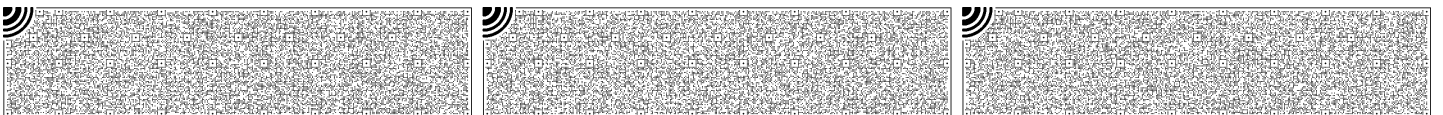
## ②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 제한

- 수험생은 공공기관·민간기업 채용시험 등 어학성적이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 「Q-Net」, 「공인회계사시험」, 「보험전문인시험」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사이트에 등록된 어학성적은 확인서 발급 불가
  - ※ 현재 「정부24」에서는 인사혁신처에 등록된 어학성적만 조회 가능

###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한국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영어성적인정서를 접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영어성적 유효 확인을 받았으나,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이 안됨('25.5월)

### < 「정부24」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교부 화면 >



<「정부24」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샘플)>

제 2024- 00000089호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성 명: 홍 길 동

생 년 월 일: 2005. 03. 01.

〈 어학성적 등록 사항 〉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인정기간	성적	등급
G-TELP Speaking	0002-0028787	2022.10.10.	2027.12.31.	73	-
G-TELP(LEVEL2)	0002-0028787	2022.10.10.	2027.12.31.	73	-
TOEIC	168461	2023.11.26.	2028.12.31.	905	-
TOEIC Speaking	168461	2023.12.10.	2029.12.31.	Advanced High	-
TOEIC(일본응시)	110088	2023.11.14.	2028.12.31.	30	-

위 어학성적은 인사혁신처의 검증을 거쳐 사전등록한 성적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인 사 혁 신 처 장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화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 등 채용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에서 수험생의 어학성적을 조회·확인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 현재 「e하나로민원」에서는 인사혁신처에 등록된 어학성적만 조회 가능한 상태
  - \*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 처리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총 181종('25.12월 기준)

< 관련 법령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어학성적) 화면 >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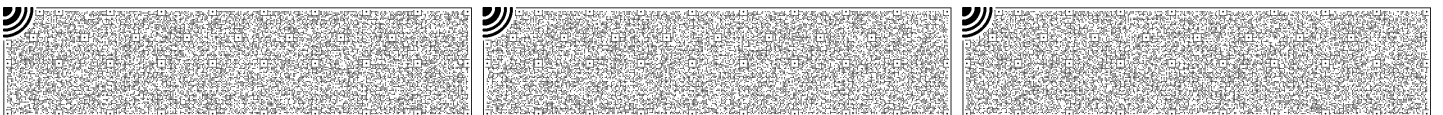
▼

어학성적

검색

전체 1 건

순번	사무명(공통)	행정정보명	법적 근거
1	인사혁신처 사전등록 어학성적 조회	사전등록어학성적 전자민원구비서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4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



# IV 개선방안

## 1 어학성적 확인 및 인정 기준 완화

- 개별기관에서 운영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의 상호 연계 등을 통해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
  -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 Q-Net(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인회계사시험(보험감독원) ↔ 보험전문인시험(보험개발원) 간 시스템 연계, 인사혁신처에서 타 기관 채용시험에 도입한 방식 등 참고

-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계획 등 공고 시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에 따른 어학성적 제출·등록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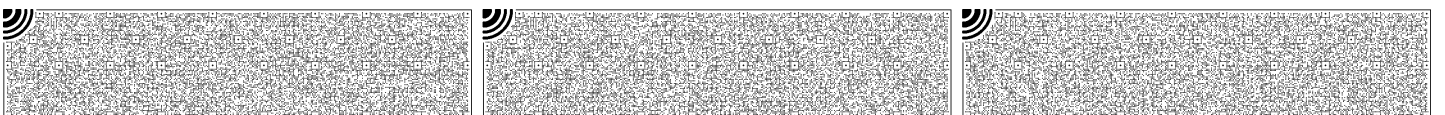
<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예시 >

현행	개선안(예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등 공단 외 타 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이라 하더라도 시험 시행기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어학성적으로 대체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 2 어학성적 정보 공동이용 확대

-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서 등록·관리중인 어학성적 정보를 「정부24」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
  -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대상 및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확대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어학성적 확인 및 인정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기관에서 운영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의 상호 연계 등을 통해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li> <li>○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계획 등 공고 시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에 따른 어학성적 제출·등록 절차 안내</li> </ul>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어학성적 정보 공동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서 등록·관리중인 어학성적 정보를 「정부24」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li> </ul>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 조치기한: 2027. 6월



**붙임**      **관련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세무사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1.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업 무 범 위	세 부 업 무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관리, 시험문제 출제·선정·편집·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인계, 시험 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발표 등
2.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관한 업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 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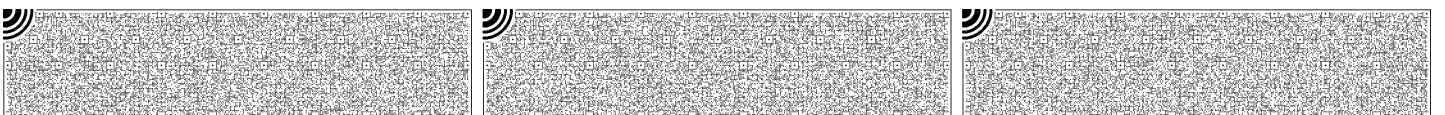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 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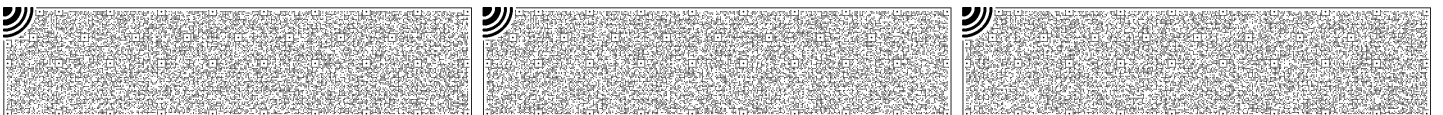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②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준학예사 시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 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별표 1의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은 준학예사 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2.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기준 점수·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6조(시험과목 등)

-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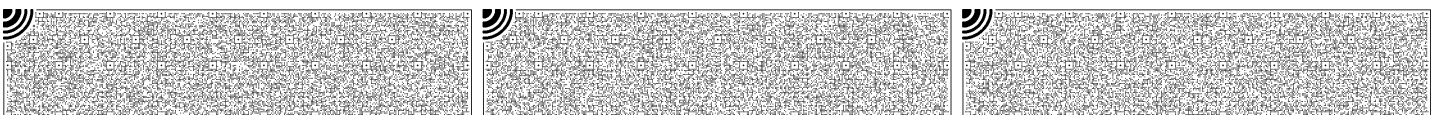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제26조(업무 위탁)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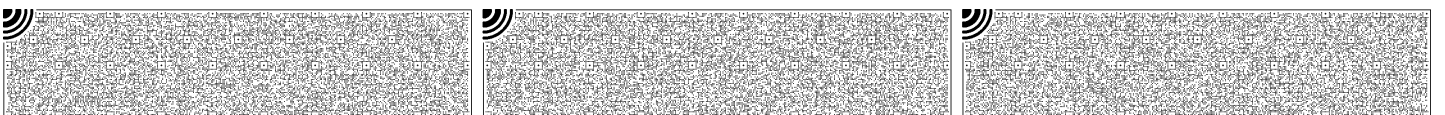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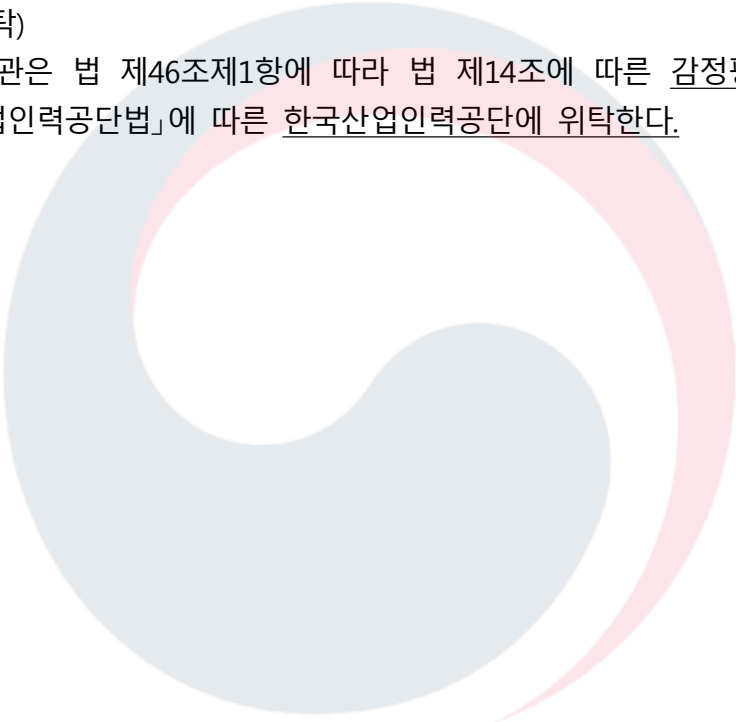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 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 □ 변리사법

<지식재산처>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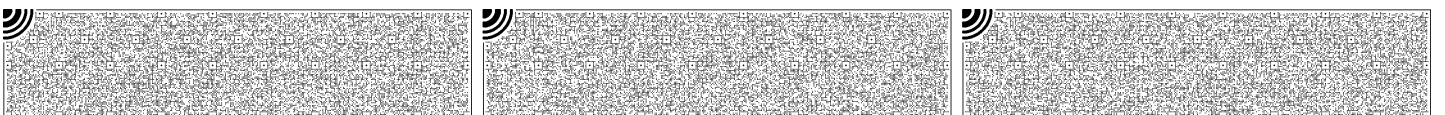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제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그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응시원서
-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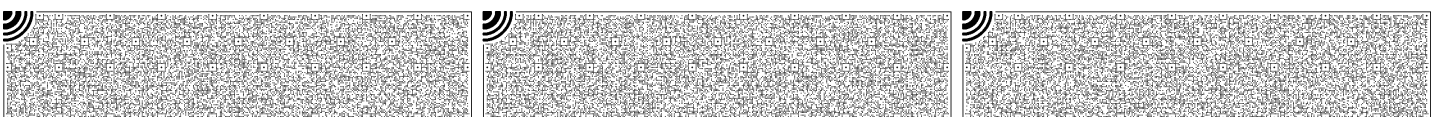
제38조(업무의 위탁)

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제194조(업무의 위탁)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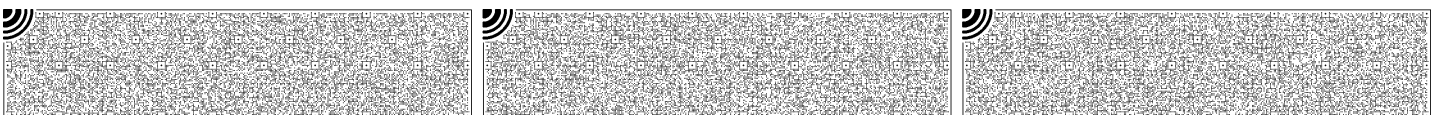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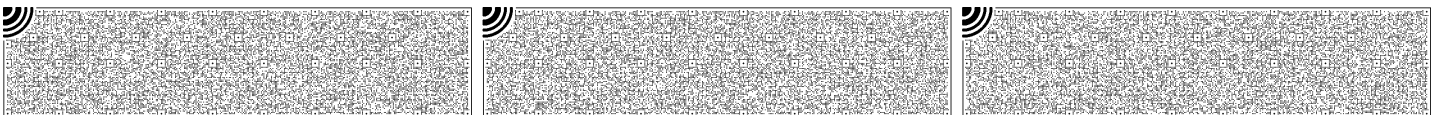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제55조(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5월 18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권 석 원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울

위원 신 상 욱



정 본 입 니 다 .

2026. 5. 18.

국 민 권 의 위 원

